

GATT 협정 내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소고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를 중심으로*

오 선 영**

차 례

- I. 서론
- II. 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 III.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와 GATT 협정
- IV. 결론

[국문초록]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s)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무역과 환경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최종상품이 지니는 환경 유해성 외에,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성에 대한 제재 없이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WTO는 이러한 구별이 국가 간의 자유 무역(free trade)을 해치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상품의 PPMs에 따른 차이를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PPMs 차이에 따른 무역 제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러한 공정 및 생산방법의 차이가 비록 최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413-B00026).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중상품의 특성에 반영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WTO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상품의 PPMs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제III조(내국민대우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위반을 제소하는 회원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요구하는 제XI조(수량제한금지 원칙)의 관할 사항이라는 GATT/WTO 패널의 기존 입장을 비판하면서 제III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제III조에 관한 주석(Note Ad Article III)에서 비록 무역관련 국내 조치가 국경 조치처럼 수입품의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 징수되어도 이러한 제재가 국산품 및 수입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III조의 적용 대상임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PPMs에 의한 무역조치는 제III조의 관할사항이다. 더불어, PPMs 차이는 상품의 판매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상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III조가 적용된다.

한편 제III조는 국산품과 '동종 상품(like products)'인 수입품에게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의 핵심은 상품간의 '동종성' 여부와 '불리한 대우'의 존재라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급변하였음에 주목하여,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의 기준을 주목하고, 이와 더불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의 '규제 목적(regulatory purpose)'을 고려하게 된다면 PPMs에 따른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환경보호 및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PPMs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협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I. 서론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는 2011. 3. 23.자로 일본 정부의 출하금지조치(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등 4개현의 특정 품목에 대한 출하금지)에 맞추어 이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유제품, 신선과일, 야채류 등)에 대하여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없

이도 각 FDA 지역사무소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may detain)는 내용의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발령했다¹⁾. 미국 FDA의 이러한 조치는 엄밀히 따지면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넓게 보면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염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 방법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무역과 환경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품이 만들어지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이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종상품이 지니는 환경 유해성 외에,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성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령,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과 그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구별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WTO는 이러한 구별이 국가 간의 자유 무역(free trade)을 해치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상품의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따른 차이를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정 및 생산방법 차이에 따른 무역제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러한 공정 및 생산방법의 차이가 비록 최종상품의 특성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WTO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본고에서는 WTO의 다자간 협정 중 핵심적인 협정이라 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²⁾으로 그 범위를 좁혀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회원국의 '규제적 차이'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³⁾

1)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mport Alert 99-33, available at http://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621.html (last visited on March 27, 2011).

2)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pr. 15,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A, 1867 U.N.T.S. 187, 33 I.L.M. 1153 (1994).

본고의 주장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본고에서는 먼저 공정 및 생산방법의 의의, 역사 및 유형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제III조(내국민대우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조치의 위반을 해소하는 회원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요구하는 제XI조(수량제한금지 원칙)의 관할 사항이라는 GATT/WTO 패널의 기존 입장을 비판하면서 제III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III조는 기본적으로 국산품과 ‘동종 상품(like products)’인 수입품에게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discrimination)’의 적용을 금지시키고 있는바, 같은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단지 공정 및 생산방법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종 상품’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규제적 차이’가 ‘불리한 대우’가 아님을 밝혀, 결국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조치가 GATT의 제III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였다.

II. 공정 및 생산방법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1. 공정 및 생산방법의 의의와 역사

공정 및 생산방법(이하 ‘PPMs’)은 상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방법 또는 자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방법을 일컫는다.⁴⁾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제활동

3) WTO의 ‘무역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회원국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술 규정을 채택,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 및 공정방법에 의한 무역규제가 상품이 지니는 특징(characteristics)과 관련된 것이면, 이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구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은 회원국이 과학적 근거주의에 기초하여 자국민의 건강보호, 또는 동·식물의 보호 등을 위한 환경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및 공정방법에 의한 규제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WTO의 다자간 협정 중 GATT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Conceptual Framework and Considerations on Use of PPM-Based Trade Measures,

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존층의 파괴, 예측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 현상, 그리고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더 이상 완제품 사용 및 소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해당 상품의 생산과정 전 단계(life-cycle of products)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환경의 저하(environmental degradation)를 막고 이를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PPMs 규제의 기본 논리이다.⁵⁾ 완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externality)을 상품 가격에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생산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상품의 생산(production), 분배 및 판매(distribution and sale), 그리고 사용 및 폐기(use and disposal) 등의 생산방식 전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PPMs는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완제품 출하 시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게 된다.⁶⁾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경 관련 PPMs 무역규제조치는 한 회원국이 상대 회원국에게 자국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WTO 체제하에서 PPMs에 근거한 이러한 무역규제조치는 상대국의 정당한 '국권 행사(regulatory autonomy)' 권한 침해라는 우려와 더불어, PPMs규제가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상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무역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PPMs 규제의 인정은 곧 다른 종류의 무역 장벽을 급속히 확산시켜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 간의 이동을 해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89년 성장호르몬이 처리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EC의 수입금지조치⁸⁾ 및 1990년 건착망을 사용하여 잡은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가공품에 대

OCDE/GD(97)137, at 7 (이하 'OECD Document 1997').

5) *Id.* at 9.

6) 이명균, 새로운 무역장벽 PPMs 규제, LG 주간경제, 1997년 4월 9일, 59면.

7) 김영생, 환경보호와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에 근거한 무역조치, 국제통상연구, 3권, 2호 1998, 192면.

8)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WT/DS26/AB/R. WT/DS48/AB/R (Jan. 16, 1998) [이하 Appellate Body,

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사례가⁹⁾ 등장하면서 PPMs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무역과 환경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실제로 PPMs에 근거한 규제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¹⁰⁾

PPMs에 근거한 규제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906년 채택되었던 ‘백색 유황성냥의 생산 및 수입 금지를 위한 조약’¹¹⁾ 이 유황성냥을 생산하는 과정과 방법에 따라 특정 무역규제를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CFCs 함유 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세정제나 발포제로서의 이용 등 생산 공정에서의 CFCs 사용을 금지하는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¹²⁾에 이르기까지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일부 다자간 환경협정에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특히 몬트리올 의정서는 PPMs에 의한 무역 제한 조치를 인정하고 이에 국제적 구속력을 부여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¹³⁾ 이러한 PPMs에 대한 무역규제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PPMs에 근거한 규제는 한 회원국이 상대 회원국에게 행하는 일방적 무역규제 뿐만 아니라 다자간 환경협정 및 국제협약에 이르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런데 지구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PPMs 무역규제조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지려면, 자유 무역과 환경보호라는 양자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국제 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확보 수단으로 무역규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WTO 체제하에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활용되어짐으로써 자유로운 상품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EC-Hormones].

9)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 GATT, B.I.S.D., (39th Supp.) (Sep. 3, 1991, unadopted) [이하 Panel Report, *US-Tuna/Dolphin*].

10) 이명균, 전계논문, 1997, 59면.

11) Convention Respecting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White (Yellow) Phosphorus in the Manufacture of Matches, September 26, 1906, 99 BFSP 986 (1906).

12)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Sep. 16, 1987, 26 ILM 1550 (1987).

13) 이명균, 전계논문, 1997, 60면.

미치는 것을 우려하여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크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의 조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WTO 설립협정¹⁴⁾ 전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 전문은 회원국들의 경제활동이 환경보호를 도모하고, 세계 자원의 최적 이용을 고려하는 등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공정 및 생산방법의 유형

일반적으로 PPMs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정이나 생산과정이 상품의 소비 단계에서 일어나느냐 또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가 상품의 분배 및 판매(distribution/marketing), 또는 상품의 소비(consumption)나 소비 후의 폐기(disposal) 시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최종 상품의 물리적 특성(physical properties)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관련(product-related) PPMs'이며, 둘째는 PPMs가 최종 상품이 나오기 전에 행해지는 원료의 채취나 가공의 사육 및 도살과 같이 상품의 생산되는 과정에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규제로서 최종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품무관련(non-product-related) PPMs'이다.¹⁵⁾ 제품관련 PPMs와 제품무관련 PPMs의 구별은 WTO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제품관련 PPMs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관련 PPMs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직접 규제를 통하여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제품무관련 PPMs는 최종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¹⁶⁾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PPMs에 대한 규제라 할 때에는 제품무관련 PPMs를 의미하게 된다.

14)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pr. 15, 1994, 1867 UNTS 154; 33 ILM 1144 (1994).

15) OECD Document 1997, *supra* note 4, at 10-11.

16) 이재형,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연세대 법학연구, 20권, 2호, 2010, 47면.

가. 제품관련 PPMs

제품관련 PPMs는 해당 상품을 소비 또는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입국에서 해당 상품의 수출국에 환경오염을 교정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시킨다. 즉, 환경오염이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기초한 경우, 수입국에 소비의 부정 (consumption externality)이 발생하는데, 수입 상품에 대한 제재 없이는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없기 때문에 제품관련 PPMs가 허용된다.¹⁷⁾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관련 PPMs가 불필요한 무역 제재 또는 왜곡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다.¹⁸⁾ 제품관련 PPMs 무역조치는 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 즉, 식품 안전(food safety)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에 기초한 환경기준은 유해농약 및 살충제 잔류기준 및 소고기 성장호르몬의 사용 규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⁹⁾

나. 제품무관련 PPMs

제품무관련 PPMs는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환경오염이 상품의 소비단계가 아닌 생산과정에서만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오염이 해당 상품의 교역을 통해 수입국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생산외부성 (production externality)이라 한다.²⁰⁾ 예를 들어, 생태계 보호 등의 목적으로 A라는 생선을 잡을 때, 건착망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PPMs 규제 자체는 A 생선 자체가 갖는 고유한 상품의 특성, 또는 A 생선의 영양적 가치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여 이러한 PPMs 규제는 A 상품이 갖는 물리적 특성과 무관한 것이다.²¹⁾ 생산외부성이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spill-over

17) 김영생, 전제논문, 1998, 196면.

18) OECD Document 1997, *supra* note 4, at 14.

19) 김영생, 전제논문, 1998, 197면.

20) Steve Charnovitz, *The Law of Environmental "PPMs" in the WTO: Debunking the Myth of Illegality*, 27 Yale J. Int'l L. 59, 65 (2002).

21) *Id.*

effects)가 상대 무역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생산외부성 및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 또는 이해관계가 회원국마다 다르게 되면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의 찬반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회원들 간에 생산외부성을 내부화 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게 된다.²²⁾

OECD는 제품무관련 PPMs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월경성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으로 하나의 상품을 공정하고 생산하는 방법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또는 서로 공유하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이 자연 서식지나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²³⁾ 두 번째는 ‘이주성 동물과 공유생물 자원문제(migratory species and shared living resources)’로 한 회원국의 공정 및 생산방법이 이주성 동물 또는 공유 생물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²⁴⁾ 건착망을 사용하는 참치 잡이의 금지 협정 또는 공해상의 어족자원의 남획을 금지하는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²⁵⁾ 세 번째는, 전 세계적 환경문제(global environment concerns)이며, 이는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위협 및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에 위협을 주는 등의 한 회원국의 공정 및 생산방법이 모든 인류의 공유 자원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²⁶⁾ 마지막으로, ‘국내환경오염(local environmental concerns)’으로 이는 생산외부성이 다른 국가에 특별한 파급효과가 없이 자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²⁷⁾ 국내 환경오염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공정 및 생산방법이 개별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한 회원국이 이러한 PPMs를 규제할 근거 및 PPMs에 기초한 환경기준 조화(harmonization)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22) OECD Document 1997, *supra* note 4, at 16.

23) *Id.* at 15.

24) *Id.*

25) 김영생, 전계논문, 1998, 198면.

26) OECD Document 1997, *supra* note 4, at 15.

27) *Id.*

III.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와 GATT 협정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PPMs에 근거해 실행되는 개별국가의 무역조치와 WTO의 통상규범들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US-Tuna/Dolphin* 사례를 기점으로 유럽의 광우병 파동 및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론자 사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일방적인 PPMs 무역규제가 자칫 후진국 상품의 시장 경쟁력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품무관련 PPMs에 대한 WTO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개별국가의 도덕, 윤리적인 가치, 또는 문화적인 선호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 PPMs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무역규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환경피해의 사실과 범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WTO의 통상 규범과의 마찰은 더욱 첨예해진다. 더욱이, 자국민의 건강보호 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국의 영토 밖에서 행해지는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한 제재는 자칫 다른 회원국이 가지는 고유한 주권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우려까지 대두되면서 제품무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에 대한 WTO 체제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아래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가 그 자체만으로도 과연 GATT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전통적으로 WTO 체제는, 최종상품이 공정되고 생산되는 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해당 상품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해당 상품의 시장경쟁력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재들은 일응 추정(*prima facie*)으로 GATT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²⁸⁾ 따라서, 환경에 비친화적인 방법(*environmentally unsound manner*) 등으로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해 행해지는 불리한 대우가 비록 국내외 동종 상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GATT의 일반적 예외 조항인 제XX조

28) Robert Hudec, *The Product-Process Doctrine in GATT/WTO Jurisprudence*, i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ESSAYS IN HONOUR OF JOHN H. JACKSON* 186, 187 (Marco Bronckers ed., 2000).

에 의해 규제가 되지 않는 한 이는 GATT 제III조(내국민 대우 조항) 또는 제XI조(수량제한 금지 조항)의 위반이 된다.²⁹⁾ 이와 관련해 PPMs에 근거한 규제가 GATT 제III조의 위반인지 아니면 제XI조의 위반인지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가 제III조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그 논쟁의 핵심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 사이에 '동종성(likeness)'의 성립 여부와 그러한 수입 상품에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가 존재하는지 여부인데,³⁰⁾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가 GATT 규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제소국이 '동종성' 및 '불리한 대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부담하기 때문이다.³¹⁾ 그러므로 PPMs에 근거한 규제가 제III조에 의해 규율되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를 취하고 있는 회원국(대계의 경우 피소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반면 제XI조는 동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³²⁾ 관세 또는 조세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수량 제한 등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PPMs에 근거한 무역 규제를 취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제XI조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어 제XI조의 위반 입증이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고자 한다.

2.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에 GATT 제III조와 제XI조의 적용 여부

최종 상품 자체에 대한 무역규제가 아니라 생산방법에 대한 회원국의 무역제제조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1991년도의 *US-Tuna/Dolphin* 분쟁이다. 본 사례에서 미국은 참치 포획 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건착망의 사용을 실

29) *Id.*

30) Jochem Wiers, *WTO Rules and Environmental Production and Processing Methods (PPMs)*, 2 ERA Forum 101, 103 (2001).

31) *Id.*

32) GATT 제XI조에 대하여 3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농산품에 대하여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이며, 둘째, GATT 제XII조에 EK라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하여 부과되는 쿼터가 있으며, 셋째, GATT 제XIX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가 해당된다.

질적으로 금지하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잡힌 참치 및 이러한 참치로 가공되어진 참치가공품(tuna products)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미국은 참치를 포획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가 국내산 참치뿐만 아니라 멕시코산 수입참치에도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GATT의 제III조 제4항에 부합하며, 설령, 제III조의 위반이라고 판정되더라도 이것은 돌고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GATT 제XX조의 예외 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³³⁾ 한편, 멕시코는 미국의 이러한 무역규제가 GATT 제III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조치(internal measure)로 볼 수 없고 이는 제XI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이라고 반박하며 결국 미국의 MMPA는 GATT의 제XI조 위반임을 주장하였다.³⁴⁾ 이에 패널은 멕시코의 주장에 동의하며 미국의 MMPA가 돌고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잡힌 참치 및 이러한 참치로 가공된 참치가공품의 판매(sale) 자체를 규율하는 제재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는 곧 ‘상품자체(products as such)’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참치를 포획하는 방법에 대한 조치이고, 이에 본 사건은 제III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³⁵⁾ 패널의 논리는, GATT 제III조는 상품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해서만 규율하는데 참치를 포획하는 방법이 참치가 가지는 상품자체의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결국, 참치를 포획하는 방법이 참치라는 상품의 판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제III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시한 것이다. 더불어, 이는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부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GATT 부속서 I의 주(註)와 보충적 규정 중 ‘제III조에 관한 주석(Note Ad Article III)’³⁶⁾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 조치(internal measure)라 볼 수 없음을 밝히며 미국의 MMPA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참치 및 참치가공품의 직접적인 수입

33) Panel Report, *US-Tuna/Dolphin*, *supra* note 8, ¶ 3.20.

34) *Id.*, ¶¶ 3.10-3.

35) *Id.*, ¶¶ 5.10-1.

36) 제III조에 관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과징금, 또는 제1에 언급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동종 국내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수입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 징수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금지(direct import prohibition)이고, 이로써 제XI조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³⁷⁾

그러나 패널의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경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취하게 되는 PPMs 관련 규제가 GATT 규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제III조의 적용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WTO 체제하에서는 GATT 제III조와 제XI조가 적용되는 사안 및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이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³⁸⁾ 외견상 제XI조는 외국 상품의 수입 제한, 즉 수입국 국경 내로의 반입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국경 조치(border measure)인 반면, 제III조는 수입된 상품에 대한 국내 조치(internal measure)를 규율하기 때문에 양 조문은 서로 다른 요건을 구성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각종 무역관련 국내 조치는 실상 국경 조치와 국내 조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제III조에 관한 주석서(Note Ad Article III)에 따르면, 비록 무역관련 국내 조치가 국경 조치처럼 수입품의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 징수되어도 이러한 제재가 국산품 및 수입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III조의 적용 대상임을 진술하고 있어, 무역관련 국내 제재 등이 국경 조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무역관련 국내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어떤 조문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US-Tuna/Dolphin* 사건 이후에 이와 유사한 *US-Shrimp/Turtle*³⁹⁾ 사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끝내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PPMs 관련 무역규제에 대한 GATT 조문 적용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현 체제에서는 공정 및 생산방법의 차이만으로 서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며, GATT의 일반적인 예외조항인 제XX조에 따라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특히, 환경조치와 관련하여 제XX조 (b)항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37) *Id.*, ¶ 5.18.

38) Jochem Wiers, *supra* note 30, at 103.

39)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 (Oct. 12, 1998) [이하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Turtle*].

한 조치와 (g)항인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자원 자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XX조의 적절한 활용은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규제조치의 인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XX조의 부적절한 남용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하여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를 굉장히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제XX조에 의해 구제된 환경조치가 현 시점까지 존재하지 않음을 살펴볼 때, 제XX조에 의한 해석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III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PPMs 관련 규제에 대한 GATT 관련규정의 적법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3. GATT 제III조 적용범위 분석

WTO는 기본적으로 ‘비차별주의금지(non-discrimination Principle)’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통상법 체계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이다. 이는 곧 수입품에 대한 대우와, 이와 ‘동종(like)’ 관계에 있는 국산품에 대한 대우간의 비차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GATT의 제III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GATT 제III조는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내국민대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tax) 또는 기타 부과금(charge)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조치(fiscal measure)들은 제2항에서 다루고 있다. PPMs 관련 무역규제들은 제4항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4항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자 한다. 먼저 제4항은 “WTO 회원국의 상품이 다른 회원국에 수입될 경우 수입국 내의 같은 상품(like products)에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수입품의 국내 판매(internal sale), 판매를 위한 제공(offering for sale), 구매(purchase), 운송(transportation), 유통(distribution) 또는 사용(use)에 영향을 미치는(affecting) 모든 법규 및 요건(all law, regulations and requirements)”에 관하여 적용됨을 진술하고 있다.⁴⁰⁾ 한편, 제III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 조치가 반드시 국경을 넘어 국내의 시장에 이미 진입한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

40) GATT, *supra* note 2, Art. III:4.

이 아니라 상품이 수입되는 시점에서 적용되어 비록 이러한 제제가 국경 조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수입한 회원국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 및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품 및 국산품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치이면 제Ⅲ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PPMs 관련 무역규제가 수입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Ⅲ조가 적용되게 된다. 그런데 *US-Tuna/Dolphin* 사건을 보더라도, 참치 포획시 같이 잡히는 돌고래를 보호하고자 선박에 따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특정 장치 비용은 참치 가격(price)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참치 및 참치가공품의 판매량(quantity)에도 실제로 영향을 끼쳤다.⁴¹⁾ 이는 곧, 참치를 포획하는 방법은 참치 및 참치가공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기후 변화 또는 식품의 안전성(food safety) 등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날로 커지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행태 또한 변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분명 하나의 상품이 공정되고 생산되는 방법이 그 상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품을 구별 짓는 중요한 잣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Ⅲ조는 국산품과 ‘동종 상품(like products)’인 수입품에게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의 핵심은 상품 간의 ‘동종성’ 여부와 ‘불리한 대우’의 존재라 할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가. 동종 상품(Like Products)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 상품(like products)’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국, 제Ⅲ조는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것이지 다른 상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하는 ‘차등(differentiation)’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⁴²⁾ 따라서, 이 원칙의 가장 핵심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간의 ‘동종성(likeness)’이므로 제품무관한 PPMs 조치가 GATT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는 결국 이러한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41) Robert Howse & Donald Regan, *The Product/Process Distinction – An Illusory Basis for Disciplining ‘Unilateralis’ in Trade Policy*, 11 Eur. J. Int’l L. 249, 254 (2000).

42) 최원목, *국제경제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6, 134면.

‘동종성’ 평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⁴³⁾ *US-Tuna/Dolphin* 사례에서는 패널이 GATT의 제XI조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제III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돌고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잡힌 참치와 그러지 아니한 참치와의 동종성 여부는 살피보지 않았다.

상품의 ‘동종성’ 이라는 것은 국산품과 수입품이 ‘직접 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관계에 있게 되면 성립한다. 전통적으로 ‘동종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GATT/WTO 패널은 1970년의 ‘국경과세조정보고서(The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 BTA Report)’에⁴⁴⁾ 의존하여 제품의 물리적인 성질(physical Characteristics), 제품의 최종용도(end-use) 및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Consumer’s tastes and habits) 등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상품의 관세분류(custom classification)를 ‘동종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종 상품’의 평가는 ‘사안별 분석(case-by-case)’임을 거듭 강조하였다.⁴⁵⁾

GATT/WTO 패널이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를 다른 객관적인 기준들과 함께 하나의 고려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지만, 일반적으로 GATT/WTO 패널은 다른 객관적인 요소들의 평가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결국 환경보호를 위한 PPMs 관련 규제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또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consumer’s perceptions and behaviors)은 상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공정 방법이나 생산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품의 ‘동종성’ 구별에 이러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결국 PPMs에 따른 규제의 목적 또는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면서 공정이 된 철강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철강이 비록 최종 상품으로서 두 철강이 지니는 겉모습(physical appearance)

43) *EC-Asbestos* 사례처럼 제품관련 PPMs는 상품이 지니는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동종 상품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 132, WT/DS135/AB/R (March, 12, 2001) [이하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44)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 adopted Dec. 2, 1970, B.I.S.D. 18S/97.

45) Appellate Body Report, *EC-Asbestos*, *supra* note 43, ¶¶ 101-2.

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환경마크제도'가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상품의 공정 및 생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 여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또는 행동 패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⁴⁶⁾ 그러므로,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의 재평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이라는 기준에 대한 좀 더 비중 있고 배려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Consumer's Tastes and Habits)

EC-Asbestos 사례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Ⅲ조 제4항에서 다루고 있는 '동종성'의 개념에는 상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health risk)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성은 상품의 물리적인 특성(physical properties)과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면서 석면(asbestos)의 유해성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⁷⁾ 이에 따르면, 상품이 지니는 유해성(risks)은 물리적인 특성 외에 소비자의 인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동종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소기구의 판결은 환경보호 등의 PPMs 관련 조치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다양한 기후변화현상이 가지고 오는 환경적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 피해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의 공정 또는 생산 단계에서 취하게 되는 조치들은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그러하지 못한 상품 간의 물리적인 특성의 차이(distinction)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분명히 소비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46) 환경마크제도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vailable at

http://ecolabel.koeco.or.kr/intro/intro01_1.asp?search=1_1 (last visited on March 27, 2011).

47) Appellate Body, *EC-Asbestos*, supra note 43, ¶¶ 113 & 151.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소비형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조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년 실시한 「소비자인식과 기업의 대응과제」조사에 의하면 '대체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5.2%에 달하였다.⁴⁸⁾ 특히 품질이나 가격조건이 다소 불리해도 이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20%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로, 제일기획이 2010년 3월 실시한 「그린 소비자 인식과 소비행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77.3%를 차지했으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도 40%에 달하였다.⁴⁹⁾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유사하나 품질 또는 가격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3년 만에 무려 2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에 기반을 둔 비영리 국제환경단체인 기후그룹(Climate Group)이 2007년 10월 발표한 「소비자, 브랜드 및 기후변화(Consumers, Brands and Climate Change)」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중 60%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으며 친환경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하는데 긍정적 이었다.⁵⁰⁾

이러한 소비 형태의 변화는 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최종 상품 그 자체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도덕적(moral)이고 생태학적(ecological) 책임을 같이 나누겠다는 소비자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⁵¹⁾ 그리고 위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의 공정 및 생산 단계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환경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이는 결국 PPMs에 대한 차이가

48)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소비자인식과 기업의 대응과제' 조사, 2008. 8. 7.

49) 제일기획, '그린 소비자 인식과 소비행태 조사', 2010. 3.

50) The Climate Group, "Consumers, Brands and Climate Change 2007(US)", 2007. available at <http://www.theclimategroup.org/publications/2007/9/11/consumers-brands-and-climate-change-2007-us/> (last visited on March 27, 2011).

51) Douglas A. Kysar, *Preferences for Processes: The Process/Product Distinction and the Regulation of Consumer Choice*, 118 Harv. L. Rev. 525, 640-641 (2004).

상품의 시장 경쟁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전술한 *EC-Asbestos* 사건에서의 상소기구의 판결문이다. 본 사례에서 상소기구는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역시 상품들 간의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market place)’ 성립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를 분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⁵²⁾ 이는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이 ‘동종 상품’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판단이 해당 상품의 시장 여건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EC-Asbestos* 사건에서처럼 해당 상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해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최종 상품이 지니는 물리적인 특성의 차이도 구별되고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에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됨을 알 수 있다. 상품의 공정 및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위해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기호 및 습관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고기에 투입된 성장 호르몬이 인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불분명한 경우, 비록 그러한 성장 호르몬이 처리된 소고기와 그렇지 아니한 소고기가 최종 육류 상품으로서 가지게 되는 물리적인 특성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두 육류 상품의 차이를 구분 짓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 형태를 변화하고 있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은 두 상품간의 ‘동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종성’을 판별함에 있어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이라는 판단 기준에 대한 상당한 준중이 부여된다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가 재고될 가능성이 크다.

(2)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에 있어 ‘규제목적(regulatory purpose)’의 고려

‘동종 제품’을 판별함에 있어,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가 추구하는 ‘규제목적(regulatory purpose)’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WTO 회원국들은 PPMs 규제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방식의 개선을 통해 오염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청정 생산 기술 등을 통한 환경 친화적 상품의 개발을 추구하고 나아가 인

52) Appellate Body, *EC-Asbestos*, *supra* note 43, ¶¶ 120-3.

간 및 동식물의 건강보호라는 '규제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목적'이 상품의 '동종성' 판별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ATT/WTO 패널이 '동종성' 판별 기준으로 삼는 네 가지의 요소(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그리고 관세분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상소기구가 강조한 것은 이 네 가지 요소 외에도 다른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US-Malt Beverages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 상품'에 대한 판별은 각 회원국들이 가지는 정당한 '국권 행사(regulatory autonomy)' 존중과 같은 일반적 의무 사항에 중대한 역할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일단 해당 상품들이 동종 상품이라고 결론되어지면, 환경보호와 같은 목적으로 상품의 차이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행하는 '정책적 상품의 차등(regulatory products differentiation)'이 설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바로 제III조의 위반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동종 상품'을 판별함에 있어, 이러한 결정이 각 회원국의 '규제 권한(regulatory authority)' 및 '정책 선택권(policy options)'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⁵³⁾ 이러한 패널의 결정과 논리는 후에 상소기구에 의해 기각되었다. 하지만, 회원국의 무역규제의 '규제목적'이 '동종성' 판별에 유일한(exclusive) 기준은 아니나 결정적(deciding)인 요인임을 언급함으로써, GATT 제III조의 재해석의 필요성을 가속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⁵⁴⁾

이는 *US-Malt Beverages* 및 *US-Automobiles*⁵⁵⁾ 사례에서 논의되고 발전되어진 '조치목적설(Aim-and-Effects Theory)'과 그 논리를 같이 한다. '조치목적설'이란 겉모습이 동일한 두 상품이 이를 지각하는 대상의 시각 및 목적 차이에 따라 같은 물체로 인지되기도 하고 다른 물체로 인지되기도 하므로, 결국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⁵⁶⁾ 이러한 '조치목적설'에 의하면 회원국의 내부 조치(제III조 제4항) 및 조세 조치(제III조 제

53)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 ¶ 5.72, DS23/R, GATT B.I.S.D., 39S/206 (June 19, 1992) [이하 Panel Report, *US-Malt Beverages*].

54) William J. Snape, III and Naomi B. Lefkowitz, *Searching for GATT's Environmental Miranda: Are "Process Standards" Getting "Due Process?"*, 17 Cornell Int'l L.J. 777, 796 (1994).

55) Panel Report, *United States - Taxes on Automobiles*, DS31/R, GATT B.I.S.D. (Oct. 11, 1994, unadopted) [이하 Panel Report, *US-Automobiles*].

56) 최원목, 전거서, 2006, 142면.

2항)의 합법성(legitimacy)은 회원국의 무역규제가 추구하는 ‘목적(aim)’과 이러한 규제가 상품의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effects)’을 모두 고려하여 따져보게 되는데, 그러한 무역규제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이러한 규제조치로 인해 실제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등의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III조의 위반에 해당된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US-Malt Beverages* 사건에서의 패널의 결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사례에서, 패널은 “제III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정책적 목적(policy purposes)’에 의해 구별된 다른 상품 간의 ‘차등(differentiating)’ 자체를 막고자 함이 아니다”고 판결하였다.⁵⁸⁾ 이는 ‘동종 상품’의 판별 시 무역규제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규제목적’의 고려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종 상품’ 구별 시 ‘규제목적’이 고려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III조 제1항을 들 수 있다.⁵⁹⁾ 제III조는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인데 제1항에서 조세 조치 및 국내 조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so as to afford protection)’ 수입 상품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1항이 제III조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다⁶⁰⁾. 이러한 견해에 의한다면 제III조 제4항에서 제III조 제2항(조세 조치)과 달리 본 항을 해석함에 있어 제III조 제1항을 같이 해석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 규제 조치의 ‘목적’ 고려에 대한 ‘원문적 근거(textual basis)’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무역규제의 ‘규제목적’이 제대로 고려되어 지지 않을 시, 환경보호 및 인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를 위한 규제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도 바로 제III조 위반으로 될 확률이 크다.⁶¹⁾ ‘조치목적설’을 비롯하여 무역규

57) Robert Hudec, *GATT/WTO Constraints on National Regulation: Requiem for an "Aim and Effects" Test*, 32 Int'l Law. 619, 627 (1998)

58) Panel Report, *US-Malt Beverages*, *supra* note 53, ¶ 5.25.

59) 최원목, 전제서, 2006, 142면.

60) Appellate Body, *EC-Asbestos*, *supra* note 43, ¶ 93.

61) Robert Howse & Elisabeth Turk, *The WTO Impact on Internal Regulations: A Case Study of the Canada-EC Asbestos Dispute*, in *TRADE AND HUMAN HEALTH AND SAFETY* 77, 81 (George A. Bermann & Petros C. Mavroids, eds., 2006).

제의 위반성 판결여부에 ‘목적’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우려중의 하나가 바로 GATT 조항의 일반적 예외 조항인 제XX조의 존재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인데,⁶²⁾ 제XX조에 나열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GATT 제XX조가 제정된 1947년에 비해 현대사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변화 등 많은 환경문제, 인권, 사회복지 등의 제반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볼 때, 제XX조의 예외사유의 제한성은 더욱 부각되어, 무역규제의 ‘규제목적’ 고려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⁶³⁾ 또한, 제XX조는 제III조에 대한 예외조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GATT의 일반조항에 대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제III조에서 ‘규제목적’을 고려하였다 하여 제XX조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무역규제 자체가 추구하는 ‘규제목적’을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당해 회원국의 입법 역사를 접근(access)하는 일 또한 쉽지 않고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역규제의 ‘규제목적’ 고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⁶⁴⁾ 또한, 그러한 제제가 이루고자 하는 ‘규제목적’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 어떠한 ‘규제목적’을 결정적인(determinative) 요소로 보아 제III조의 위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무역규제의 ‘규제목적’ 고려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⁶⁵⁾ 그러나, *Japan-Alcohol Beverages*⁶⁶⁾ 사례에서 상소기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무역규제의 목적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보호주의’적인 적용은 당해 무역규제의 디자인 또는 입법의 구조 및 입법 방식에서 식별할 수 있다.”⁶⁷⁾ 따라서 ‘보호주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해 무역규제의 여러 규정(provisions), 구조(structures), 정치적(political) 그리

62) Robert Hudec, *supra* note 57, at 627-8.

63) 최원목, 전게서, 2006, 143면.

64) Won Mog Choi, Overcoming the “Aim and Effect” Theory: Interpretation of the “Like Product” in *GATT Art III*, 8 U.C. Davis J. Int’l L. & Pol’y 107, 119 (2002).

65) *Id.*

66) Appellate Body,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Nov. 01, 1996). [이하 Appellate Body, *Japan-Alcoholic Beverages*].

67) *Id.*, at 29.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lthough it is true that aim of a measure may not be easily ascertained, nevertheless its protective application can most often be discerned from the design, the architecture, and the revealing structures of a measure.

고 역사적(historical) 문맥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객관적 목적(objective purpose)’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⁶⁸⁾ 즉, 무역규제의 ‘규제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조치를 마련한 입법자의 의도(intent) 보다는 특정한 조치를 마련하게 한 정치적 압력(political forces) 등을 고려하면 무역규제의 ‘규제목적’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⁹⁾

이와 같이, 무역규제가 갖는 ‘규제목적’의 식별이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의 ‘규제목적’이 제III조의 위반 여부, 특히 상품을 구별 짓는 ‘동종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대상으로 추가된다면, 환경보호를 비롯한 다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PPMs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제III조에 부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

제III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위반 여부는 상품간의 ‘동종성’과 ‘불리한 대우’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설령 두 상품이 ‘동종’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만 제III조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다. ‘불리한 대우’에 대한 논의는 ‘동종 상품’ 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는 해당 수입품이 시장에서 갖는 ‘경쟁 여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수정(modified) 받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⁷⁰⁾ 그런데 ‘경쟁 여건’이 수정되었다는 의미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EC-Asbestos*의 상소기구의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C-Asbesto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불리한 대우’는 제III조에서 규율하는 ‘반보호주의(anti-protection)’와 연관되어야 하며, 동종 국산품에 비해 수입품이 ‘불리한 대우’

68) Robert Howse & Donald Regan, *supra* note 61, at 265.

69) Donald H. Regan, *Regulatory Purpose and “Like Products” in Art III:4 of the GATT*, in TRADE AND HUMAN HEALTH AND SAFETY 190, 205 (George A. Bermann & Petros C. Mavroids, eds., 2006).

70) Appellate Body,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 137, WT/DS161/AB/R, WT/DS169/AB/R (Dec. 11, 2000) [이하 Appellate Body, *Korea—Beef*].

를 받았다는 의미는 결국 그러한 대우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요구한다고 판결하였다.⁷¹⁾ 더불어, 상소기구는 ‘동종 상품’인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이(distinction)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입품이 동종 상품인 국산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⁷²⁾ 이는 곧 ‘불리한 대우’가 회원국들이 수입품과 이와 ‘동종’ 관계에 있는 국산품에 행하는 단순한 ‘규제적 차이(regulatory distinction)’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⁷³⁾ 따라서 상품이 공정되고 생산되는 방법에 따른 ‘규제적 차이’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공정 및 생산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이 ‘동종’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어지더라도 이러한 PPMs의 차이에 근거한 ‘규제적 차이’는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PPMs에 근거한 무역규제 조치가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종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III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대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규제적 차이’가 남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성’ 판단에서처럼 PPMs 관련무역조치의 ‘규제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적 차이가 환경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PPMs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제III조에 부합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IV. 結 論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등 범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의 공정, 판매 및 소비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71) Appellate Body, *EC-Asbestos*, *supra* note 43, ¶ 100.

72) *Id.*

73) TRACEY EPPS & ANDREW GREEN, RECONCILING TRADE AND CLIMATE: HOW THE WTO CAN HELP ADDRESS CLIMATE CHANGE 73 (2010).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는 자칫 비관세장벽 등 자유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작용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남용 또는 오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유 무역을 통한 국가 간의 활발한 상품의 이동 등 무역의 확대는 경제활동의 증가 외에, 환경오염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초래하므로 자유 무역과 환경보호의 가치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제재가 자유 무역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제재가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환경보호 및 인간의 건강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는 GATT의 협정의 위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무역규제조치는 수입품 및 국산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경 조치의 성격을 띠는 국내 조치를 강조하여 제III조의 적용대상임을 밝혔다.

또한, 생산방법의 차이에 의한 구별은 '동종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한 '차등(differentiation)'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최종 상품 그 자체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여부에 따라 구매의 패턴이 달라지고 이는 곧 상품의 시장 경쟁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구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기후변화 등의 환경 위해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상품의 물리적인 특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보호, 자국민의 건강 보호 및 사회 복지 등의 정당한 사유 등을 추구하는 무역규제의 '규제 목적(regulatory purpose)'이 '동종 제품'의 구별에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또한, 공정 및 생산방법에 따른 '규제적 차이'가 상품의 '동종성'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님을 밝혀 결국 수입품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III조에 부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설령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 의한 무역규제가 제III조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GATT의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XX조가 적절히 활용된다면 이러한 규제가 GATT 협정

에 위반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XX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GATT/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에 대한 비판은 본고에서 다루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아울러, 다자간무역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전통보제도(prior notification requirement)'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 또한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하겠다.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일 : 2011. 4. 15.	게재확정일 : 2011. 4. 22.
----------------------	--------------------	----------------------

참고문헌

- 김영생, “환경보호와 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에 근거한 무역조치”, 「국제통상연구」 제3권 제2호, 1998.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소비자인식과 기업의 대응과제’ 조사, 2008. 8. 7., *available at* http://www.korcham.net/EconNews/KcciReport/CRE01102R.asp?m_menu=&m_DataID=20080807001&m_chamcd=A001&m_query=&m_queryText=&m_page=1 (*last visited on* March 27, 2011).
- 이명균, “새로운 무역장벽 PPMs 규제”, 「LG 주간경제」 1997. 4.
- 이재형,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연세대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0.
- 제일기획, ‘그린 소비자 인식과 소비행태 조사’, 2010. 3. *available at* <http://admankim.com/100103535682> (*last visited on* March 27, 2011).
- 최원목, 「국제경제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6.
- 환경마크제도 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vailable at* http://ecolabel.koeco.or.kr/intro/intro01_1.asp?search=1_ (*last visited on* March 27, 2011)..
-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pr. 15, 1994, 1867 UNTS 154; 33 ILM 1144 (1994).
- Appellate Body,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Nov. 01, 1996).
- Appellate Body,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 137, WT/DS161/AB/R, WT/DS169/AB/R (Dec. 11, 2000).
-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 132, WT/DS135/AB/R (March, 12, 2001).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AB/R (Oct. 12, 1998).
- Convention Respecting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White (Yellow) Phosphorus

- in the Manufacture of Matches, September 26, 1906, 99 BFSP 986 (1906).
- Donald H. Regan, *Regulatory Purpose and "Like Products" in Art III:4 of the GATT*, in TRADE AND HUMAN HEALTH AND SAFETY 190 (George A. Bermann & Petros C. Mavroids, eds., 2006).
- Douglas A. Kysar, *Preferences for Processes: The Process/Product Distinction and the Regulation of Consumer Choice*, 118 Harv. L. Rev. 525 (2004).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mport Alert 99-33, available at http://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621.html.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pr. 15, 1994.
- Jochem Wiers, *WTO Rules and Environmental Production and Processing Methods (PPMs)*, 2 ERA Forum 101 (2001).
-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A, 1867 U.N.T.S. 187, 33 I.L.M. 1153 (1994).
-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Sep. 16, 1987, 26 ILM 1550 (1987).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Conceptual Framework and Considerations on Use of PPM-Based Trade Measures*, OCDE/GD(97)137.
- Panel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Alcoholic and Malt Beverages*, ¶ 5.72, DS23/R, GATT B.I.S.D., 39S/206 (June 19, 1992).
-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 GATT, B.I.S.D., (39th Supp.) (Sep. 3, 1991, unadopted).
- Panel Report, *United States—Taxes on Automobiles*, DS31/R, GATT B.I.S.D. (Oct. 11, 1994, unadopted).
- Robert Howse & Donald Regan, *The Product/Process Distinction—An Illusory Basis for Disciplining 'Unilateralis' in Trade Policy*, 11 Eur. J. Int'l L. 249 (2000).
- Robert Howse & Elisabeth Turk, *The WTO Impact on Internal Regulations: A*

Case Study of the Canada–EC Asbestos Dispute, in TRADE AND HUMAN HEALTH AND SAFETY 77 (George A. Bermann & Petros C. Mavroids, eds., 2006).

Robert Hudec, *GATT/WTO Constraints on National Regulation: Requiem for an “Aim and Effects” Test*, 32 Int'l Law. 619, 627 (1998).

Robert Hudec, *The Product–Process Doctrine in GATT/WTO Jurisprudence*, i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ESSAYS IN HONOUR OF JOHN H. JACKSON 186, 187 (Marco Bronckers ed., 2000).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Hormones)*, WT/DS26/AB/R. WT/DS48/AB/R (Jan. 16, 1998).

Steve Charnovitz, *The Law of Environmental “PPMs” in the WTO: Debunking the Myth of Illegality*, 27 Yale J. Int'l L. 59 (2002).

The Climate Group, “Consumers, Brands and Climate Change 2007(US)”, 2007. *available at* <http://www.theclimategroup.org/publications/2007/9/11/consumers-brands-and-climate-change-2007-us/>

TRACEY EPPS & ANDREW GREEN, RECONCILING TRADE AND CLIMATE: HOW THE WTO CAN HELP ADDRESS CLIMATE CHANGE 73 (2010).

William J. Snape, III and Naomi B. Lefkowitz, *Searching for GATT’s Environmental Miranda: Are “Process Standards” Getting “Due Process?”*, 17 Cornell Int'l L.J. 777 (1994).

Won Mog Choi, *Overcoming the “Aim and Effect” Theory: Interpretation of the “Like Product” in GATT Art III*, 8 U.C. Davis J. Int'l L. & Pol'y 107 (2002).

Working Party Report, *Border Tax Adjustment*, adopted Dec. 2, 1970, B.I.S.D. 18S/97.

[Abstract]

Trade-related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GATT Agreement:
Focusing on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Oh, Sun Young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related policy measures are designed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production processes.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ultimate goal of environment protect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avoid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t all stages in the life-cycle of products. Neverthe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WTO rul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n particular, and trade-restrictive measures based on PPMs has caused much debate. It is because certain production externalities do not affect the product characteristics itself and may be referred to as non-product-related PPMs requirement. As PPM requirements can be designed in different ways, PPM-based measure can be used as non-tariff barrier, and therefo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unwilling to accept its consistency with GATT rules despite of its important roles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raditionally, the PPM-based measures restricting trade has been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Article XI of the GATT rather than Article III unless they have been justified under Article XX of the GATT.

In this article, I argued that PPMs-based measures objectively related to actual non-protectionist goals are indeed consistent with Article III provided that the standard of consumer's tastes and habits and regulatory purpose in determining 'like products' have been fully appreciated. According to Note Ad Article III provides that internal regulatory measures imposed at the point or time of importation are still covered by Article III if the measures are applied to both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In addition, the way the products are processed or produced indeed affects the price of the products and its quantity sold in a given market.

Late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preference for environment friendly products among consumers, and it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whether products are “like” in a sense tha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s in the marketplace is decided by consumers. Accordingly, consumers have come to view themselves as purchasing not only products, but also shares of responsibility in protecting environment. It should be noted that as Appellate Body in *EC-Asbestos* held, risk posed by the product is clearly important in assessing different product’s physical characteristics as well. In addition, determination of regulatory purpose is not that much difficult because it can be inferred from design, architecture and structure of its provisions. Indeed, consideration of regulatory purpose is consistent with general principle of Article III, anti-protectionism, that is addressed in Article III:1. Therefore, non-protectionist PPMs requirements from important environmental policy purposes should not be significantly constrained by WTO law.

주 제 어 공정 및 생산방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동종상품,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규제목적, 불리한 대우, 무역과 환경

Key Words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Article III, Like Products, Consumer’s Tastes and Habits, Regulatory Purpose, Trade and Environment, Less Favourable Treatment